

헌법재판소공보

제316호

2023년 2월 20일(월요일)

헌법재판소사무처 (1)

— 목 차 —

규 칙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헌법재판소규칙 제454호)	142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헌법재판소규칙 제455호)	143

인 사	146
-----------	-----

공지사항

주요업무일지	147
심판사건통계표	149
등록도서현황	151
주요신착도서	151
- 2023년도 1월 구입도서	151
- 2023년도 1월 교환도서	152
헌법재판소장 동정	154

공 고

헌법재판소공고 제2023-3호(2022년도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운영실태 공표)	156
헌법재판소공고 제2023-5호(주식매각 공개목록)	184

국선대리인제도 안내	185
------------------	-----

규 칙

○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54호)
2023. 1. 6.)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사무기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퇴직 또는 퇴직예정인 관리운영직군 정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등 변동된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증원(헌법연구관 3, 전산사무관 1, 보안서기보 1) 등에 따른 정원 변동사항 반영(별표)

[별표]

사무기구의 공무원정원표

총 계	339
정무직 계	2
사무처장(국무위원급)	1
사무차장(차관급)	1
특정직 계	63
헌법연구관	63
특정직 또는 일반직 계	12
헌법연구관·관리관 또는 법원관리관(1급)	1
헌법연구관·관리관·법원관리관·이사관 또는 법원이사관(1급 또는 2급)	1

헌법연구관·이사관·법원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2급 또는 3급)	2
헌법연구관·부이사관·법원부이사관·서기관 또는 법원서기관(3급 또는 4급)	1
헌법연구관·서기관 또는 법원서기관(4급)	3
헌법연구관·서기관·법원서기관·행정사무관·법원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4급 또는 5급)	4
별정직 계	2
비서실장(1급 상당)	1
비서관(5급 상당)	1
일반직 계	260
관리관·법원관리관·이사관 또는 법원이사관(1급 또는 2급)	1
이사관·법원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2급 또는 3급)	4
부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3급)	1
부이사관·법원부이사관·서기관 또는 법원서기관(3급 또는 4급)	4
부이사관·법원부이사관·사서부이사관·기술부이사관·서기관·법원서기관·사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3급 또는 4급)	1
부이사관·법원부이사관·서기관·법원서기관 또는 별정직(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3급 또는 4급)	1
서기관 또는 법원서기관(4급)	9
서기관·법원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4급)	2
서기관·법원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4급)	2
서기관·법원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4급)	9
서기관·법원서기관·행정사무관·법원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4급 또는 5급)	10
사서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4급 또는 5급)	2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4급 또는 5급)	1
기술서기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4급 또는 5급)	1



행정사무관·법원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5급)	41
행정사무관·법원사무관· 검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5급)	1
사서사무관(5급)	2
전산사무관(5급)	4
행정주사·법원주사·검찰주사 또는 속기주사(6급)	27
행정주사·법원주사·검찰주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6급)	10
사서주사(6급)	2
전산주사(6급)	4
기계주사·전기주사·토목주사 또는 건축주사(6급)	2
시설주사(6급)	1
행정주사보·법원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속기주사보(7급)	12
사서주사보(7급)	3
경위주사보(7급)	1
사무주사보(7급)	1
전산주사보(7급)	2
기계주사보(7급)	1
건축주사보(7급)	1
방송통신주사보(7급)	1
보건주사보(7급)	1
사서서기(8급)	2
경위서기(8급)	2
사무서기(8급)	19
전산서기(8급)	1
사서서기보(9급)	2
속기서기보(9급)	1
경위서기보(9급)	1
사무서기보(9급)	18
보안서기보(9급)	25
교환서기보(9급)	1
관리서기보(9급)	12
열관리주사보(7급)	1
보건운영서기보(9급)	3
기록연구관	2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촬영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공보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물품관리 담당)	1
전문경력관 다군(촬영 담당)	1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55호)
2023. 1. 30.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의3제5항 중 “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거나 제97조제2항·제10항에 따라 30
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2. 제9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3. 제97조제2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
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4.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
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

제14조제1항제4호 중 “법정경위·위생·사역·방
호·경비”를 “법정경위·보건·보안”으로 한다.
제45조의3제3항을 삭제한다.

제45조의4의 제목 중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를 “휴직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
가 또는 육아휴직”으로 한다.

① 사무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
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
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
는 경우
2. 제9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경우
3. 제97조제2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4.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로 한정한다.

제8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89조제2항 본문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을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다.

제89조제3항 본문 중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

제9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을 “연도 중 결근·휴직(법 제71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다음해에 한정하여”를 “다음 해에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병가(제95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제96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 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제97조제2항제3호 중 “유산·사산의 위험”을 “유산·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제98조 단서 중 “연가를 제외한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같은 연도 내 제95조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 내 제95조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78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퇴직



제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 개정이유</p> <p>한시임기제공무원 관련 사항, 복무 관련 사항 등 현행 규정 상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p> <p>◇ 주요내용</p> <p>가. 한시임기제공무원 관련규정 정비(제4조의3제5항 및 제45조의4)</p> <p>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가 사용 근거규정 신설(제96조제12호 신설)</p> <p>다. 특별휴가 제도 개선(제97조)</p> <p>라. 퇴직희망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근거규정 신설(제123조의2 신설)</p>
--

[별표 3]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
 (제14조제1항제2호 관련)**

직군 \ 직렬		계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행정	행정	변호사, 법무사(7년)	법무사(3년)	법무사		
	사서	1급 정사서(5년)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년)	2급 정사서(3년)	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	한글속기 1급(10년)	한글속기 1급(6년)	한글속기 1급(3년)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2급(3년)	한글속기 2급
기술	전산	전산 직무분야 기사(3년), 전산 직무분야 기사(6년), 전산 직무분야 산업기사(9년)	전산 직무분야 기사(3년), 전산 직무분야 산업기사(6년)	전산 직무분야 기사, 전산 직무분야 산업기사(3년), 전산 직무분야 기사(4년)	전산 직무분야 기사, 전산 직무분야 산업기사(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전산 직무분야 산업기사, 전산 직무분야 기사(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전산 직무분야 기사(3년), 전산 직무분야 산업기사(6년)	전산 직무분야 기사(3년), 전산 직무분야 산업기사(9년), 전산 직무분야 산업기사(6년)	전산 직무분야 기사(3년), 전산 직무분야 산업기사(3년), 전산 직무분야 기사(4년)	전산 직무분야 기사(3년), 전산 직무분야 산업기사(6년), 전산 직무분야 산업기사(9년), 전산 직무분야 산업기사(6년)	전산 직무분야 기사(3년), 전산 직무분야 산업기사(6년), 전산 직무분야 산업기사(9년), 전산 직무분야 산업기사(6년)

		대한민국명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2년)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2년)
기계	기계 직무분야 기술사	기계 직무분야 기능장, 기계 직무분야 기사(6년), 에너지 직무분야 기사(6년), 에너지 직무분야 기사(3년), 기계 직무분야 산업기사(9년), 에너지 직무분야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기계 직무분야 기사(3년), 에너지 직무분야 산업기사(3년), 에너지 직무분야 산업기사(3년), 기계 직무분야 산업기사(4년), 에너지 직무분야 산업기사(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2년)	기계 직무분야 기사, 에너지 직무분야 기사, 기계 직무분야 산업기사(3년), 에너지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계 직무분야 기능사(2년), 에너지 직무분야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 대회 입상자(2년)
전기	전기 직무분야 기술사	전기 직무분야 기능장, 전기 직무분야 기사(6년), 전기 직무분야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전기 직무분야 기사(3년), 전기 직무분야 산업기사(6년)	전기 직무분야 산업기사, 전기 직무분야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 대회 입상자(2년)
토목	토목 직무분야 기술사	토목 직무분야 기능장, 토목 직무분야 기사(6년), 토목 직무분야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토목 직무분야 기사(3년), 토목 직무분야 산업기사(6년)	토목 직무분야 산업기사, 토목 직무분야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 대회 입상자(2년)
건축	건축사, 건축 직무분야 기술사	건축 직무분야 기능장, 건축 직무분야 기사(6년), 건축 직무분야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건축 직무분야 기사(3년), 건축 직무분야 산업기사(6년)	건축 직무분야 산업기사, 건축 직무분야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 대회 입상자(2년)
시설	조경 직무분야 기술사	조경 직무분야 기능장, 조경 직무분야 기사(6년), 조경 직무분야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조경 직무분야 기사(3년), 조경 직무분야 산업기사(6년)	조경 직무분야 산업기사, 조경 직무분야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 대회 입상자(2년)

방송 통신	통신 직무분야 기술사	통신 직무분야 기능장, 통신 직무분야 기사(6년), 통신 직무분야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통신 직무분야 기사(3년), 통신 직무분야 산업기사(6년)	통신 직무분야 기사, 통신 직무분야 산업기사(3년), 통신 직무분야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2년)	통신 직무분야 산업기사, 통신 직무분야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 대회 입상자(2년)
관리					제1종운전면허 (보통), 제2종운전면허 (보통)
보건	보건 직무분야 기술사	영양사(8년), 위생사(8년)	영양사(5년), 위생사(5년)	영양사(2년), 위생사(2년)	영양사, 위생사

비고 :

- 해당 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 등을 하는 경우에는 5급으로의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자격증(소요 경력 포함) 소지 후 관련 분야에서 2급은 10년 이상, 3급은 8년 이상, 4급은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직무분야별 자격증 종류 및 등급은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하고, 직렬별로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동일직렬의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인 사

○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 2023. 1. 1.

前 심판지원실장 이 규 현
 면 행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기획재정국장 신 승 훈
 명 행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헌법연구원 인사위원회

- 2023. 1. 7.

사무차장 김 정 원
 명 헌법연구원 인사위원회 위원 연임
 (2023. 1. 7. ~ 2024. 1. 6.)

○ 신규채용

- 2023. 1. 9.

이 병 로
 임 건축주사보
 명 행정관리국 청사관리과

- 2023. 1. 16.

권 순 형
 임 전산사무관
 명 심판지원실 심판지원국 정보화기획과

- 2023. 1. 25.

윤 태 기
 임 보안서기보(일반임기제)
 명 행정관리국 총무과
 (2023. 1. 25. ~ 2024. 1. 24.)

- 2023. 2. 1.

손 채 유
 임 헌법연구원
 (2023. 2. 1. ~ 2023. 1. 31.)

전 효 빈
 임 헌법연구원
 (2023. 2. 1. ~ 2023. 1. 31.)

유 맑 음
 임 헌법연구원보

이 윤 정
 임 헌법연구원보

정 지 혜
 임 헌법연구원보

○ 전 보

- 2023. 1. 23.

헌법재판소사무처
 법원사무관 김 양 수
 명 행정관리국 청사관리과

○ 파 견

- 2023. 1. 10.

신임헌법연구원 이 진
 명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국외전문문화연수 파견근무
 (2023. 1. 10. ~ 2023. 7. 9.)



- 2023. 1. 28.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서 덕 교
명 헌법재판소사무처 입법협력관 근무기간
연장
(2023. 1. 28. ~ 2023. 1. 31.)

- 2023. 2. 1.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정 민 주
명 헌법재판소사무처(AACC지원과) 근무
(2023. 2. 1. ~ 2024. 1. 31.)

○ 휴 직

- 2023. 1. 9.
헌법연구원 박 다 정
명 육아휴직
(2023. 1. 9. ~ 2024. 2. 29.)

기획조정실 기획재정국 평가감사과
사무주사보 오 현 주

명 헌법재판소사무처 근무

명 해외동반휴직
(2023. 1. 9. ~ 2024. 1. 8.)

- 2023. 1. 21.
헌법연구원 황 지 섭

명 육아휴직
(2023. 1. 21. ~ 2023. 2. 19.)

- 2023. 1. 23.
헌법연구원 양 소 연

명 고용휴직
(2023. 1. 23. ~ 2023. 7. 31.)

- 2023. 1. 25.
행정관리국 총무과
보안서기보 김 성 경

명 육아휴직
(2023. 1. 25. ~ 2024. 1. 24.)

- 2023. 2. 1.
헌법연구원 정 은 혜

명 육아휴직 연장
(2023. 2. 1. ~ 2024. 1. 31.)

공 지 사 항

○ 주요업무일지

<2023년 1월>

- '22. 12. 26. 「해외 로스쿨생 교육실무연수」 실시
 - 연수기간: '22. 12. 26.(월) ~ '23. 3. 3.(금)
 - 연수대상: Ersal Yilmaz 등 5명
 - 연수내용: 헌법재판 관련 외국사례 조사 등 지도연구관 부여 연구과제 수행
- 1. 9.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1기)」 실시
 - 교육기간: 1. 9.(월) ~ 1. 20.(금)
 - 교육대상: 25개 법학전문대학원생 56명
 - 교육내용: 헌법재판실무 교육, 청구서 및 의견서 작성 연습, 토론 등
- 1. 11. 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개최 준비
 - 참가신청 접수마감: 1. 11.(수), 총 55개팀
 - 서면심사: 1. 16.(월)
 - ※ 본심 일정: 2. 3.(금) 09:00
- 1. 12. 변론
 - 2020헌마10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 1. 15. 몽골 헌법재판소 대표단 방문
 - 방문기간: 1. 15.(일) ~ 1. 18.(수)
 - 방문인사: Chinbat Namjil 헌법재판소장, Erdenebulgan Juujaa 재판관 등 6인
 - 주요일정: MOU 체결, AACC 연구사무국 방문, 재판소장 주최 만찬
- 1. 17.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1. 17.(화) 15:00
 - 회의안건: 2023년도 연구·교육기본 계획안
- 1. 20. 재판관회의 개최
 - 안건: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헌법연구원 임용안, 헌법연구원보 임용안
- 1. 25.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3년 제1호(통권 제58호) 발간
 - 발간일자: 1. 25.(수)

- 수록내용: 미국·독일 등 최신 세계헌법 판례, 파키스탄 대법원 소개 등

1. 30. 재판관회의 개최

- 안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2023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세출예산, 2023년도 국외여비 집행계획

1. 1. ~ 1. 31.

홈페이지 운영현황

- 접속건수: 262,512건
(누적통계:262,512건)



○ 심판사건통계표

심판사건총괄표

2023. 1. 31. 현재

구분	접수			처리										미 취 제				
	합 계	전달 (년) 미제	이달 (년) 접수	합 계	결 정													
					계	위 헌	헌 법 불 합 치	한 정 위 헌	한 정 합 헌	인 용	합 헌	기 각	각 하		기 타			
1 월 계	합 계	1,890	1,672	218	194	190									190 (190)		4	1,696
	위헌법률	80	76	4														80
	탄 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7	7															7
	헌 법 소 원	계	1,803	1,589	214	194	190								190 (190)		4	1,609
	§68①	1,192	1,020	172	167	165								165 (165)		2	1,025	
	§68②	611	569	42	27	25								25 (25)		2	584	
금 년 누 계	합 계	1,890	1,672	218	194	190								190 (190)		4	1,696	
	위헌법률	80	76	4													80	
	탄 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7	7														7	
	헌 법 소 원	계	1,803	1,589	214	194	190								190 (190)		4	1,609
	§68①	1,192	1,020	172	167	165								165 (165)		2	1,025	
	§68②	611	569	42	27	25								25 (25)		2	584	

※ 주

- 결정란의 < >는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숫자임.
- 헌법소원심판사건 중 지정재판부의 처리건수는 ()안에 기재하고 본란의 숫자에 합산표시 하였음.
- 법령에 대한 §68①의 헌법소원심판사건이 인용된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등으로 분류 하였음.

심판사건누계표

1988. 9. 1. - 2023. 1. 31. 현재

구분	접수	처리											미제		
		합계	결정									취하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	합헌	기각	각하	기타				
합계	47,489	45,793	44,646 <792>	696 <501>	296 <210>	70 <52>	28 <29>	870	3,082	8,411	31,183 (28,927)	10	1,147	1,696	
위헌법률	1,093	1,013	886 <385>	317 <293>	92 <65>	18 <13>	7 <14>		375		77		127	80	
탄핵	3	3	3					1		1	1				
정당해산	2	2	2					1			1				
권한쟁의	122	115	96					20		29	47		19	7	
헌법소원	계	46,269	44,660	43,659 <407>	379 <208>	204 <145>	52 <39>	21 <15>	848	2,707	8,381	31,057 (28,927)	10	1,001	1,609
	§68①	36,769	35,744	34,890 <184>	124 <107>	87 <61>	20 <16>		848	5	8,381	25,417 (23,705)	8	854	1,025
	§68②	9,500	8,916	8,769 <223>	255 <101>	117 <84>	32 <23>	21 <15>		2,702		5,640 (5,222)	2	147	584

※ 주

1. 결정란의 < >는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숫자임.
2. 헌법소원심판사건 중 지정재판부의 처리건수는 ()안에 기재하고 본란의 숫자에 합산표시 하였음.
3. 법령에 대한 §68①의 헌법소원심판사건이 인용된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등으로 분류하였음.



○ 등록도서현황

(2023. 1. 31. 현재, 단위: 권)

구 분		합 계	국 내	국 외		
				소 계	동 양	서 양
2022년 말 누계		180,001	83,738	96,263	36,710	59,553
2023년	전월 말 누계	-	-	-	-	-
	1월	500	297	203	28	175
	소 계	500	297	203	28	175
총 계		180,501	84,035	96,466	36,738	59,728

○ 주요신착도서

- 2023년도 1월 구입도서

【국 내】

서 명	저 자 명	출 판 사	출판연도
• 형법각론	배 중 대	홍 문 사	2023
• 형법총론	배 중 대	홍 문 사	2023
• 2022 핵심실무 상속세·증여세	신재열, 노희구, 김지암	조 세 통 램	2022
• 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	청 와 대	더 휴 먼	2022
• 변호사가 묻고 변호사가 답한 Q&A	윤 성 철	법 과 교 육	2022
• 사례와 함께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	나성길, 정찬우, 정평조	삼 일 인 포 마 인	2022
• 상속,증여세 이론과 실무	이 광 재	창 해	2022

【일 본】

서 명	저 자 명	출 판 사	출판연도
• 家庭の法と裁判	家庭の法と裁判研究會	日 本 加 除 出 版	2022
• 家族に迷惑をかけない 死ぬまでにやっておくべき生前対策30事例	一 般 社 団 法 人 相 續 診 斷 協 會 (編 集)	日 本 法 令	2022
• 臨床調停學入門	梶 村 太 市	恒 春 閣	2022
• 死刑と日本人	菊 田 幸 一	作 品 社	2022
• 調停による円満解決	公 益 財 団 法 人 日 本 調 停 協 會 連 合 會	有 斐 閣	2202
• 憲法についての素朴な疑問	東 裕	一 藝 社	2022

【영 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Human Rights Challenges to European Migration Policy: The REMAP Study	Jurgen Bast	Bloomsbury Publishing	2022
• Meta-theory of Law	Mathieu Carpentier	Wiley	2022
• Pandemic Surveillance	David Lyon	Polity	2022
• Proportionality in Asia	Po Jen Yap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
•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Law: Implications for Refugees	Stephen Meili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독 일】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Die Einführung von Tonaufnahmen (§§ 100a, 100c, 100f StPO) in das Hauptverfahren	Kai Bukowski	Kovac, Dr. Verlag	2022
• Reichweite und Bedeutung des Unmittelbarkeitsprinzips im Strafverfahren	Anna-Sophie Klimke	Kovac, Dr. Verlag	2022
• Strafrecht Besonderer Teil I	Alois Birklbauer; Marianne Johanna Lehmkuhl; Alexander Tipold	facultas	2022
• Strafrecht Besonderer Teil II	Hubert Hinterhofer; Christian Rosbaud	facultas	2022
• Straftaten und Strafverfolgung im Darknet	Sandra Carina Wittmer	Nomos	2022
• Vor dem Gesetz sind nicht alle gleich	Ronen Steinke	Berlin	2022

【프랑스】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Constitutions, peuples et territoires. Mélanges en l'honneur d'André Roux	André Roux	Dalloz	2022
• La CEDEAO face aux changements anticonstitutionnels de pouvoir en l'Afrique de l'Ouest	Oumar Berte	L'Harmattan	2022

- 2023년도 1월 교환도서

- 교환처: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 교환일자: 2023. 1. 2.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Wisconsin law review vol.2022 no.5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2022



- 교 환 처: 미국 미시건대학교
- 교환일자: 2023. 1. 2.

서 명	저 자 명	출 판 사	출판연도
• Michigan Law Review vol.121 no.1-2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22

- 교 환 처: 일본 변호사협회
- 교환일자: 2023. 1. 2.

서 명	저 자 명	출 판 사	출판연도
• NIBEN Frontier vol. 219	第二東京弁護士會	第二東京弁護士會	2022

- 교 환 처: 일본 오사카(大阪)대학교
- 교환일자: 2023. 1. 2.

서 명	저 자 명	출 판 사	출판연도
• 阪大法學 vol.72 no.3/4	大阪大學大學院 法學研究科	大阪大學大學院 法學研究科	2022

- 교 환 처: 미국 콜럼비아대학교
- 교환일자: 2023. 1. 25.

서 명	저 자 명	출 판 사	출판연도
• Columbia Law Review vol.122 no.7	Columbia Law School	Columbia Law Review Association	2022

○ 헌법재판소장 동정

연 월 일	내 용
2023. 1. 10.(화)	김용섭 한국행정법학회장 접견(헌법재판소장 접견실)
2023. 1. 27.(금)	이주원 한국형사법학회장 접견(헌법재판소장 접견실)



김용섭 한국행정법학회장 접견(2023. 1. 10.)



이주원 한국형사법학회장 접견(2023. 1. 27.)

공 고

◎ 헌법재판소공고 제2023-3호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헌법재판소 정보 공개 운영실태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2022년도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운영실태

(2022. 1. 1. ~ 12. 31.)

1. 정보공개창구 설치현황

설치개소	문서과	민원실	도서관	기타
1	-	1	-	-

2.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가. 총괄

청구건수	처리현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취하 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180	104	79	7	18	-	76*

* 반복청구 등으로 인한 종결처리(35건), 정보 부존재(20건), 정보공개 결정통지 후 수수료 미납으로 인한 미교부(13건), 타기관 이송(6건), 취하(2건)

나. 청구방법별 현황

청구건수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180	6	128	-	46

다. 공개방법별 현황

공개건수	공개방법						수령방법				
	소계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소계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86	86	-	61	25	-	-	86	2	59	-	25



라.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계	당일(즉시)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104	5	99	-	-

3. 처리현황 목록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 리 사 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1	과거대의민국여천황황제직문으로모든국제세계국가칸끝마다동양국가와서양원숭이국가국법창설설치도와교육포청천판관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부존재			1.11.		
2	50년 전부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출생, 학력, 연혁, 자격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자료		1.12.	1.12.	전자 파일
3	경산시와 주식회사 ○○ 간 협약서	사본	심판 민원과	기관 이송			1.11.		
4	2022헌마1 헌법소원 청구서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1.11.		
5	지난 번 정보공개 내용에 대하여 지시자는 누구이고 작성자는 누구인지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자료		1.18.	1.18.	사본
6	1. 2014헌마 재판취소, 2015헌마358, 2015헌마480 사건의 담당재판관 2. 위 사건들이 종국되지 않고 있는 사유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1.		
7	1. 간통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2. 2013헌마142 3. 간통 위헌 결정	사본	심판 민원과	부분 공개	2~3. 해당 결정문 사본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1.18.		
8	아래 결정문 사본 1. 2009헌마333 2. 2015헌마243 3. 2017헌마413 4. 2017헌마1261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1.24.	1.27.	사본
9	경산시와 주식회사 ○○ 간 협약서	사본	심판 민원과	기관 이송			1.17.		
10	2013헌마142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1.24.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11	201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 형사소송법 관련 위헌 결정 사건 목록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자료		1.24.	1.24.	사본
12	윤○○법 위헌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1.24.		
13	경산시와 주식회사 ○○ 간 협약서	사본	심판 민원과	기관 이송			1.24.		
14	2018헌바524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2.7.	2.11.	사본
15	경산시와 주식회사 ○○ 간 협약서	사본	심판 민원과	부존재			2.4.		
16	2019헌바446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2.7.	2.17.	사본
17	2017년~2021년 사이 접수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심판(헌마 사건)에 대한 아래 통계 1. 접수연도별 미제사건 수 2. 지정재판부 각하 사건과 미제 사건을 제외한 평균 처리 소요 일수 3. 지정재판부 각하 사건을 제외하고 처리 기간이 1년 이내, 1년~2년, 2년~3년, 3년~4년, 4년~5년인 사건 수	전자 파일	심판 사무과	공개	해당 자료		2.11.	2.11.	전자 파일
18	지난 번 정보공개 답변 중 “정보화기획과에서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작성”이라고 하였는데 그 “내부 검토” 내용	사본	정보화 기획과	공개	해당 자료		2.14.	2.14.	사본
19	경산시와 주식회사 ○○ 간 협약서	사본	심판 민원과	부존재			2.4.		
20	아래 결정문 사본 1. 2015헌바370 2. 2008헌마578 3. 2015헌바77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2.14.		
21	1. 아동·청소년 관련 피해자(피고인등) 불출석에 따른 피고인등의 반론권 미보장 등 위헌 사례 2. 강제추행 등 형법, 성폭력처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사건 목록		2.14.	2.18.	사본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별특별법,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에 대한 위헌 사례 3. 형소법, 형법 위헌 사례 4. 고소인 불출석, CCTV 삭제 등 증거조작, 고소인 무고, 고소인 진술조서 날인, 형 소법 제314조·제318조 위 헌에 대한 사례 5. 강제추행·사문서위조·재물 손괴·허위공문서작성·직 무유기·직권남용·뇌물수 수, 2021도14204에 대한 위 헌 사례 6. 가장결혼에 대한 위헌 사례 7. 친족상도례 관련 위헌 사례								
22	1988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교도 소, 외국인보호시설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헌법소원 사건 이 접수된 것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부존재			2.11.		
23	1. 똑같은 보호감호를 받았는데, 절도 미수만 소송이 가능한 지에 대한 판례목록 2. 2014헌가16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1. 해당 자료 2. 해당 결정문 사본		2.14.	3.2.	사본
24	1. 청구인이 2022. 2. 7.(월)자 에 우편으로 접수한 헌법소 원심판청구서 사본 1부 및 청원서 1부 2. 현재 헌법재판관 성명과 공 무원 계급 및 헌법재판소 각 부서들의 명칭과 업무 내용 3. 주소변경신고서 1부, 국선대 리인 선임신청서 10부	사본	심판 민원과	부분 공개	1. 해당 자료(헌법소원심판청 구서 사본 제외) 2~3. 해당 자료	1. 청구내용 중 헌법소원심 판 청구서 부분: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 률」 제9조 제1항 제4 호	2.16.	2.23.	사본
25	90헌마133, 94헌마246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2.16.	2.23.	사본
26	1. 최근 5년간 귀 기관 구성원 의 신상필벌(信賞必罰) 현황 자료 2. 최근 5년간 귀 기관장의 업	전자 파일	인사과, 심판 민원과	부분 공개	2~3. 정보의 소재 안내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18.	2.18.	전자 파일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27	무추진비 사용 내역 3. 최근 5년간 귀 기관장의 연 봉 및 구성 항목 간통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사본	심판 민원과	비공개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 6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 제4 조 제1항	2.16.		
28	1. 청구인이 2021.9.2.자에 보낸 내용증명우편물 내용을 읽 어본 자들의 신분 2. 위 내용증명우편물 수령 후 조치 사항 일체	전자 파일	홍보 담당 관실	공개	해당 자료		2.28.	2.28.	전자 파일
29	1. 헌법재판소 1994.2.24. 선고 93헌마213,214,215(병합) 결정문 2. 헌법재판소 2004.5.27. 선고 2003헌마851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2.21.	3.2.	사본
30	2016헌나1 사건의 모든 변론 동영상	전자 파일	홍보 담당 관실	공개	해당 자료		3.4.		
31	1. 2013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까지 교도소 및 구치 소, 교정시설을 상대로 모 든 수용자들이 헌법소를 제 기한 사건의 판결서 2. 헌법소(판례검색안내)서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1. 부존재 2. '헌법소원심판 청구절차안 내' 책자		2.28.	2.28.	사본
32	1. 간통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2. 간통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사본	심판 민원과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 제4 조 제1항	3.8.		
33	헌법재판소 2016.12.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3.8.		
34	1. 아래 결정문 사본 ① 2018헌바524 ② 2007헌바25 ③ 2014헌마340 ④ 2015헌마359 ⑤ 2015헌마688 ⑥ 2007헌바25 ⑦ 2014헌마709 ⑧ 2013헌마585 2. 위 위헌심판 관련 사건 결 정문 3. 헌법소원 안내서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1. 해당 결정문 사본 2. 사건번호 등을 특정하여 청구 요청 3. '헌법소원심판 청구절차안 내' 책자		3.11.	3.17.	사본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35	헌법재판소 2016.12.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3.8.	3.16.	사본
36	2021헌마1420사건 기록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 제9 조 제1항 제4 호	3.7.		
37	2013헌마142 결정 내용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3.11.	3.17.	사본
38	2013헌마142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3.11.	3.18.	사본
39	2021년 12월 23일 성관련사건 미성년자나 장애인의 영상녹화 증거에 관한 위헌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3.11.	3.18.	사본
40	1. 2020.9.10. 형법 제307조 제 1항 위헌확인 변론 동영상 2. 2021.2.25. 제307조 제1항 위 헌소원 선고 동영상	전자 파일	홍보 담당 관실	공개	해당 자료	3.17.	3.17.	전자 파일	
41	1. 2014.12.23.~2022.03.22. 헌 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 원심판사건 목록 2. 열람·복사등 신청서(10부)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1.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건 목록 2. 해당 자료	4.5.			
4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현황 기간 : 2021. 1. 1.~12. 31. 1-1. 귀 위원회가 2021년 1년 간 접수한 행정심판 청 구 건수(취하 건수 제외) 1-2. 귀 위원회의 2021년 1년 간 행정심판 재결 현황 : 인용 건수, 부분인용 건 수, 각하 건수, 기각 건 수 등 2-1. 귀 위원회가 2021년 1년 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접수한 행정심판 청 구 건수(취하 건수 제외) 2-2. 귀 위원회의 2021년 1년 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전자 파일	심판 지원 총괄과	공개	해당 사항 없음	3.31.	3.31.	전자 파일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따른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 현황 : 인용 건수, 부분인용 건수, 각하 건수, 기각 건수 등								
43	1. 2002헌마478 결정문 2. 2022년 2월 결정된 사건 수 및 사건번호 3. 2010년~2022년 위헌 결정된 사건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관한 사건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1. 해당 결정문 사본 2~3. 해당 자료		4.6.	4.18.	사본
44	첨부한 등기우편물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부존재			4.13.		
45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인정, 불인정 통계(연도별 비율)	사본	심판 사무과	공개	해당 자료		4.11.	4.11.	사본
46	(사)○○이 2019.12.18.에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내용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4.5.		
47	첨부한 등기우편물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부존재			4.13.		
48	헌법재판소에서 2020년 1월부터 2022년 3월 30일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설치한 유리막 비용 총 금액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자료		4.20.	4.20.	사본
4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25.		
50	1. 2014.12.23.~2022.04.13.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사건 목록 2. 열람·복사등 신청서(5부)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1.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건 목록 2. 해당 자료		4.14.		
51	1. 2022헌마425, 2022헌사303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 위 사건이 30일 동안 사전심사 후 재소여부가 결정되는지 3. 헌법소원, 위헌심판청구서(5부)	사본	심판 민원과	부분 공개	2. 질의 답변 3. 청구서 작성례 자료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4.28.	4.28.	사본
52	성범죄 관련한 피해자의 영상 녹화물 만으로 증거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례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4.14.	4.25.	사본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53	2020헌바313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부존재			4.20.		
54	1. 청구인이 소방청에 2015. 1. 1. ~ 2022. 4. 20.까지 청구인의 휴대폰으로 119 신고 및 119 구급차 응급도움 접수한 내역 2. 청구인이 2020. 1. 1. ~ 2022. 4. 20.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접수한 진정사건들 가운데, ① 법무부 소속 출입국 관리소에서 받은 회신공문 ② 법무부 소속 국적과에서 받은 회신공문 및 진정서 3. 정부조직법 제26조에 기재된 행정각부의 도로명주소와 우편번호 4. 청구인이 인천삼산경찰서에 2022. 2. 22.에 우편접수한 청원서, 청원사건의 접수번호, 담당수사관 성명	사본	심판 민원과	부존재			4.21.		
5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25.		
5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6.		
57	결정, 효력정지 등과 관련된 내부지침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정보의 소재 안내		4.28.	4.28.	사본
58	헌법재판소 2011. 3. 21. 2009헌바31 결정문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4.28.	4.28.	전자 파일
59	첨부한 문서를 우편으로 배송토록 규정한 법률규정	사본	심판 사무과	공개	해당 규정		5.6.	5.6.	사본
6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6.		
61	2015.11.12. 공개변론 동영상 (주민등록법 위헌)	전자 파일	홍보 담당 관실	공개	해당 자료		5.6.	5.6.	전자 파일
62	헌법불합치 결정 세부 목록	전자 파일	심판 지원 총괄과	공개	해당 자료		5.11.	5.11.	전자 파일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63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동영상	전자 파일	홍보 담당 관실	취하					
64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진 제 20대 대통령 선거의 위헌여부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부존재			5.10.		
65	1. 1990년 1월부터 2022년 5월 까지 수용자 처우 등에 관 한 헌법소원 인용 결정문 2. 1990년 1월부터 2022년 5월 까지 수용자 처우 등에 관 한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결정문 3. 1990년 1월부터 2022년 5월 까지 검찰,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인용 결 정문	복제물	심판 민원과	종결			6.8.		
6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23.		
67	1. 2014.12.23. ~ 2022.05.17.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 소원심판사건 목록 2. 열람·복사등 신청서(10부)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1.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건 목록 2. 해당 자료		5.23.		
68	1. 2012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정보공개처리대장 2. 2012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위헌법률판결 3. 각 과 업무분장표 4. 각 과 예산집행내역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자료		5.31.		
69	2018헌바52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사건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5.31.	6.14.	사본
70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하여 즉 시항고 및 항고, 재항고 절차 를 진행하여 법률상 이의제기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 률, 규칙, 예규, 선례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5.31.		
71	1. 2009년 ~ 2022년 5월까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관련 헌 법소원 사건번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1. 해당 자료 2. 부존재		6.2.	6.2.	사본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72	2. 2020헌바313 결정문 1. 전라남도 보성군 별교읍 행정복지센터에 2021년 6월 방문제출한 판결문 2. 2014.10.13.부터 2022.05.31.까지 긴급지원 생계비 지급내역 3. 2014.10.13.부터 2022.05.31.까지 의료급여(기초수급자) 신청/결정 내역 및 기록 내용과 2021.08.23. 선정된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사본	심판 민원과	부존재			6.8.		
73	2014.10.13. ~ 2022.05.31.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사건 목록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건 목록		6.8.	6.8.	사본
74	2022.05.26.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결정한 사건번호 및 위헌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6.16.	6.30.	사본
75	1. 2021헌마322 사건 관련 청구인 측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청구서 및 피 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사본 2. 2021헌마16 사건 관련 청구인 측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청구서 사본	사본	심판 민원과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6.8.		
76	1. 검찰송치된 진술조서의 접수번호와 사건번호, 송치번호, 검찰청의 이름과 담당 검사, 그리고 해당 검찰송치된 검찰사건의 형제번호 2. 주한 요르단 대사관 등 12개 대사관의 도로명주소와 우편번호 3. 접수증 및 해당 사건의 수사서류를 우편접수하였을 때 접수연월일	사본	심판 민원과	부존재			6.8.		
77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조직도 화면 출력물(헌법재판소 재판관 사진 포함) 2부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자료		6.8.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78	2018헌가7, 2018헌바228(병합)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6.16.	6.21.	사본
79	2022헌마744 사건의 청구인 제출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 제9 조 제1항 제4 호	6.16.		
80	1. 2022헌마764 사건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자료 일체 2. 2022헌마272 사건의 피청구 인 등이 제출한 자료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 제9 조 제1항 제4 호	6.16.		
81	2022.02.22. 종이관보(20194호) 폐기 요청 공문서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자료		6.29.	6.29.	전자 파일
82	1. 2019.06.25.경 부산서부경찰 서, 충무지구대 직원 명단 과 공무원 계급 2. 2018.05.01. ~ 2022.06.20. 부산서부경찰서 민원사건 관 련 정보 및 담당자 3. 2014.10.13. ~ 2022.06.20.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 소원심판사건 목록 4. 열람·복사등 신청서(10부) 5.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조직도 화면 출력물(2부) 6. 목포교도소 인근지역 생태· 경관보전지역 지정 상태 및 날짜 7. 2022.05.19. 무안소방서에 제 출한 진정서 및 회신공문 8. 2016.01.01. ~ 2018.02.12.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면담 신청 기록 및 접수증 9. 2022.05.18. 대통령에게 보 낸 편지 및 첨부서류 10. 2019.07.06. ~ 2022.06.20. 청구인 접견 예약·거부· 취소 등 기록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1~2, 6~10. 부존재 3.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 출한 사건 목록 4~5. 해당 자료		7.4.	7.12.	사본
83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 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정보의 소재 안내		7.4.	7.4.	사본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헌법재판소 한정위헌 결정에 대한 정보								
84	전원재판부 재심 판결 및 판결 전 제1심 문서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정보의 소재 안내		7.4.	7.4.	사본
85	1. 지난 10년간 헌법재판소 소장 관사를 유지하기 위한 연도별 예산책정 금액과 집행내역 2. 관사의 집기비품 목록 3. 관사 각 방과 거실, 화장실 등 내부 사진 4. 관사에 근무하는 직원별 하는 일, 직급, 연봉 5.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관사에 예산지출된 내역을 일자별로 공개	전자 파일	청사 관리과, 총무과, 인사과	부분 공개	1~3., 5. 해당 자료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7.5.	7.6.	전자 파일
86	1. 헌법재판소 소장 관사에 근무하는 전속요리사에게 지급된 예산집행금액 2. 전속요리사가 공무원이면 몇 급, 몇 호봉인지, 전속요리사의 인건비내역 3. 헌법재판소 소장 관사에서 근무하는 관리인에게 지급된 예산집행금액 4. 관리인이 공무원이면 몇 급, 몇 호봉인지, 관리인의 인건비내역	전자 파일	인사과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7.5.		
87	2013헌마142, 2009헌마333, 2014헌마45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7.4.	7.8.	사본
8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4.		
89	1. 2014.10.13. ~ 2022.07.05.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사건 목록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1.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건 목록 2. 부존재		7.7.	7.7.	사본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90	<p>2. 주한 스웨덴 대사관 등 도로명주소와 우편번호</p> <p>1. 2014.10.13. ~ 2022.06.24.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사건 목록</p> <p>2. 2022.05.19. 무안소방서에 제출한 진정서 및 회신공문</p> <p>3. 위 우편물을 수거해 갔던 새벽근무 담당 교도관의 성명과 계급</p> <p>4. 위의 우편물에 관한 정보에 관해 방송한 교도관들의 성명과 계급</p> <p>5. 목포교도소 의무관이 청구인에게 처방 및 투여한 의약품 정보</p> <p>6. 전라남도경찰청 소속 경찰서들의 도로명주소와 우편번호</p> <p>7. 청구인의 전라남도경찰청에 관한 국민신문고 접수현황</p> <p>8. 전라남도경찰청장과 청문인권감사관의 성명과 계급</p> <p>9. 무안경찰서와 목포경찰서의 도로명주소와 우편번호</p> <p>10. 무안경찰서장과 청문감사인권관, 목포경찰서장과 청문감사인권관의 성명과 계급</p> <p>11. 청구인이 119 신고, 119 구급차 응급 도움 및 탑승 처리내역</p>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p>1.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건 목록</p> <p>2~11. 부존재</p>		7.7.	7.7.	사본
91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2018년 ~ 2022년 공직자 재산등록(변동) 사항	전자 파일	평가 감사과	공개	정보의 소재 안내		7.8.	7.8.	전자 파일
92	<p>1. 2014.10.13. ~ 2022.07.07.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사건 목록</p> <p>2. U.S. Marshal Office in Washinton D.C.의 도로명주소와 우편번호</p> <p>3. 미국연방항소법원의 연방판사 성명과 나이</p> <p>4. U.S. Marshal Office의 책임보안관 성명과 계급</p>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p>1.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건 목록</p> <p>2~6. 부존재</p>		7.7.	7.7.	사본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93	5. 대사관 도로명주소와 우편 번호 6.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이름 및 도로명주소와 우 편번호 2021헌마824 사건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와 증거자료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 제4 조 제1항	7.7.		
94	1. 2014.10.13. ~ 2022.07.09.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 소원심판사건 목록 2. 전남보성경찰서에 제출한 진 정서, 첨부서류 3. 전남보성경찰서에 제출한 고 소장, 진술조서, 수사결과 통지서 4. 서울서초경찰서에 제출한 진 정서, 진술조서, 첨부서류, 수사결과 통지서 5. 전라남도경찰청에 제출한 진 정서, 첨부서류, 진술조서, 수사결과 통지서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1.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 출한 사건 목록 2~5. 부존재		7.8.	7.8.	사본
95	1. 2020헌바313, 2019헌바401, 2019헌바434 결정문 2. 2019헌바401, 2019헌바434 신청서 및 보충서, 의견서 일체 3. 헌법재판소 안내 책자	사본	심판 민원과	부분 공개	1. 부존재 3. 해당 자료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 항 제4호	7.8.	7.8.	사본
96	2020.05.14. 변론 동영상(2017 헌가31)	전자 파일	홍보 담당 관실	공개	해당 자료		7.8.	7.8.	전자 파일
97	2019.04.11. 선고 동영상	전자 파일	홍보 담당 관실	공개	해당 자료		7.12.	7.13.	전자 파일
9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11.		
9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21.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100	2001헌마163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7.21.	8.1.	사본
101	1. 2014.10.13. ~ 2022.07.18.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 소원심판사건 목록 2. 인천지방경찰청에 전화 민원 신청한 사건 내용 등 3. 인천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 청구 접수 및 회신공문 전 체 기록 4. 인천삼산경찰서에 접수한 고 소장, 수사결과 통지서 5. 인천지방경찰청에 접수한 112 사건의 처리결과 내역서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1.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 출한 사건 목록 2~5. 부존재		7.21.	7.21.	사본
102	2013헌마516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7.21.	8.1.	사본
10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21.		
104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헌판결된 죄명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자료		7.21.	7.21.	사본
105	1. 2016헌나1 국회 소추의결서 2. 박 대통령 파면에 영향을 미 친 주요사건 자료 3. 헌법재판소장이 위 주요사건 인정 이유 자료	사본	심판 민원과	비공개	2~3. 부존재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 제4 조 제1항	7.21.		
106	1. 2014.10.13. ~ 2022.07.20.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 소원심판사건 목록 2. 서울시경찰청에 정보공개 청 구 접수내역 등 3. 인천삼산경찰서에 접수한 고 소장, 수사결과 통지서 4. 목포교도소장이 광주지방검 찰청 목포지청장에게 청구 인의 미국 송환을 신청한 서류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1.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 출한 사건 목록 2~4. 부존재		7.21.	7.21.	사본
10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21.		
10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2.		
109	2021. 1. 1.부터 현재까지 심리 중인 죄명	사본	심판 민원과	부존재			8.2.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 리 사 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110	1. 2014.10.13. ~ 2022.07.29.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 소원심판사건 목록 2. 전라남도경찰청의 수사이의 신청 접수 목록 및 처분결 과 통지서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1. 해당 자료 2. 부존재		8.2.	8.2.	사본
11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2.		
112	1. 용산구공고 문서가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적법문서토록 규정한 법률 규정 원본 2. 민원처리법 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중복민원으로 종결된 사안을 결정토록 규 정한 법률규정 원본 3. 2011헌마128 결정을 동일 사건임에도 상이한 결정토 록 규정한 법률규정 원본	사본	심판 민원과	부존재			8.2.		
113	1. 2022년 7월 현재 헌법재판 소 사건 처리 현황(총 심판 건수, 이 중 최종 선고까지 마친 건수) 2. 2022년 7월 현재 헌법재판 소 사건 중 중국 결정 현 황(각하, 기각, 합헌, 인용, 위헌, 헌법불합치 등) 3. 2017 ~ 2021년 각 연도별 사건 처리 현황 및 각 사 건 평균 처리 기간 4. 2017 ~ 2021년 헌법재판 관 1인당 평균 사건 처리 현황	전자 파일	심판 사무과	공개	해당 자료		8.9.	8.9.	전자 파일
114	1. 2014.10.13. ~ 2022.07.29.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 소원심판사건 목록 2.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소 에서 받은 회신 공문들과 법무부 소속 국적과에서 받은 회신공문들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1.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 출한 사건 목록 2~5. 부존재		8.2.	8.2.	사본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3.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소의 강제퇴거명령서 발급 및 집행 절차 설명서 4. 검사로부터 국외이송지휘를 받은 교도소장의 국외이송 지휘서 5.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 예진표, 확인서								
115	국제형사재판소의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본	심판 민원과	부존재			8.10.		
116	원본에 없는 재판관 서명을 재발급 때 수정한 자가 누구인지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10.		
117	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17.		
118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기본 보수와 증액 기준	전자 파일	심판 지원 총괄과	공개	해당 자료		8.17.	8.17.	전자 파일
119	2021.1.1.부터 현재까지 심리 중인 죄명 및 선고일자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10.		
120	1. 주한 스웨덴 대사관 등 도로명주소와 우편번호 2. 2022.05.19. 무안소방서에 제출한 진정서 및 회신공문 3. 위 우편물을 수거해 갔던 새벽근무 담당 교도관의 성명과 계급 4. 위의 우편물에 관한 정보에 관해 방송한 교도관들의 성명과 계급 5. 목포교도소 의무관이 청구인에게 처방 및 투여한 의약품 정보 6. 전라남도경찰청 소속 경찰서들의 도로명주소와 우편번호 7. 청구인의 전라남도경찰청에 관한 국민신문고 접수현황 8. 전라남도경찰청장과 청문인권감사관의 성명과 계급 9. 목포경찰서의 도로명주소와 우편번호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18.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 리 사 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10. 목포경찰서장과 청문감사인 권관의 성명과 계급 11. 청구인이 119 신고, 119 구 급차 응급 도움 및 탑승 처리내역 12. 미국연방항소법원의 도로명 주소와 우편번호 13. U.S. Marshal Office in Washinton D.C.의 도로 명주소와 우편번호 14. 미국연방항소법원의 연방판 사 성명과 나이 15. U.S. Marshal Office의 책 임보안관 성명과 계급 16.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의 이름 및 도로명주소와 우편번호								
121	1. 헌법재판소 공관에 근무하 는 인원에 대한 직종, 직급, 공무원기준월액 2.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 관에 지출된 인건비지출금액	사본	인사과	비공개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 제9 조 제1항 제5 호	8.29.		
122	검찰청 보완수사요구서 요청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기관 이송			8.18.		
123	1. 대상: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 위원회 소관 기관 전체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현황 2. 기간: 2015년 1월 1일 ~ 2022년 7월 31일 3. 정보공개청구 목록 1) 전체 취업확인심사 현황 - 2015년 1월 1일 ~ 2022 년 7월 31일까지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 리법과 공직자윤리법의 시행 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에 근거해, 소관 기관의 퇴직공직 자에게 취업제한여부를 확인 요청 받아 취업심사한 현황 - 취업확인심사 결과 취업제 한 판정 시, 공직자윤리법 제 17조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	전자 파일	평가 감사과	공개	해당 자료		8.30.	8.30.	전자 파일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p>사유(제17조제2항의 각호 등으로 표기)를 표기바랍니다.</p> <p>- 현황 양식: 퇴직당시 소속 기관과 직위(직급)/ 업무관련성 심사대상(부서/기관)/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및 직위/ 퇴직일/ 취업예정업체 및 부서 / 취업예정직위 / 취업예정일/ 심사일자 / 심사결과(취업가능/취업제한) / 취업제한 시 사유(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과 제17조제2항 근거)</p> <p>재산공개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등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업무관련성 심사대상(부서/기관)에 부서/기관 구분해 업무관련성 심사 범위를 표기해 줄 것을 요청함.(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3항 근거)</p> <p>2) 취업승인심사 현황과 승인사유</p> <p>- 2015년 1월 1일 ~ 2022년 7월 31일까지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에 근거해, 소관 기관의 퇴직공직자에게 취업승인을 신청받아 심사한 현황</p> <p>- 취업승인 심사결과, 취업이 승인된 퇴직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취업승인사유’(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로 표기)를 표기바랍니다.</p> <p>- 현황 양식: 퇴직당시 소속기관과 직위(직급)/ 업무관련성 심사대상(부서/기관) /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 퇴직일/ 취업예정업체 및 부서 / 취업예정직위/ 취업예정일/ 심사일자/ 심사결과(취업승인/취업불승인) / 취업승인사유</p>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124	1. 대상: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 위원회 소관 기관 전체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현황 2. 기간: 2015년 1월 1일 ~ 2022년 7월 31일 3. 정보공개청구 목록 임의취업자 심사 현황 - 2015년 1월 1일 ~ 2022 년 7월 31일까지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 리법에 근거해,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퇴직 후 취업제한기 관 임의취업자 적발 현황 - 현황 양식: 퇴직당시 소속 기관과 직위(직급)/ 업무관련 성 심사대상(부서/기관)/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부서 및 직 위/ 퇴직일/ 취업업체 및 부서 / 취업직위/ 취업(예정)일/ 심 사일자/ 제재·조치내역/ 취업	전자 파일	평가 감사과	부존재			8.30.		
12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9.1.		
126	2022년 7월경 전기통신사업자 위한 헌법불합치된 판결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9.2.	9.7.	사본
127	2013.01.01. ~ 2022.08.24.까지 1. 특정업무경비 관련 헌법재 판소에서 생산한 정보목록 2. 헌법재판소에서 매년 지급 받는 특정업무경비 연간 규 모와 사용 명목 3. 헌법재판소에서 집행한 특 정업무경비 집행내역 및 지 출증빙서류 보고서	전자 파일	총무과	부분 공개	1~2. 해당 자료 3. 해당 자료(특정업무경비 지출증빙서류 제외)	3. 청 구 내 용 중 특정업 무경비 지 출 증빙 서 류: 「공공 기관의 정 보 공개 예 관한 법률」 제9조제1 항 제4호 및 제6호	9.2.	9.2.	전자 파일
12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9.14.		
129	1. 국선대리인의 선정 현황 (2019-2021) 2. 국선대리인의 보수와 비용 지급 기준 및 내역(2019- 2021)	전자 파일	심판 지원 총괄과, 심판 사무과	공개	해당 자료		9.14.	9.14.	전자 파일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130	1) 국선대리인의 보수 및 비용 지급기준 - 보수 및 비용 지급 기준표 있으면 기준표 제공 요망 2) 실제 국선대리인의 보수 및 비용 지급 내역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유류분 제도(민법 제1112조) 관련 사건목록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자료		9.14.	9.14.	전자 파일
13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관련 2000.1.1. ~ 청구일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모든 판례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자료		9.15.	9.15.	사본
13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9.14.		
133	수원지검이 현재에 2022. 6. 28.자로 제출한 문건 중 답변서를 제외한 사건기록 전부	사본	심판 민원과	기관 이송			9.15.		
134	2022헌마1252 청구사건 내용	사본	심판 민원과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9.15.		
135	1. 교정정보시스템에 기록되어있는 청구인의 접견지인 정보 2. 2014.10.13. ~ 2022.09.13.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사건 목록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1. 부존재 2.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건 목록		9.22.	9.22.	사본
136	국선대리인선임 기각사유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사유		9.28.	9.28.	사본
137	1. 국선대리인선임 기각사유 2.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기초수급자 수급비 지급내역서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1. 해당 사유 2. 부존재		9.28.	9.28.	사본
13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9.28.		
139	1. 형법 제35조 관련 결정문 - 2022헌마1132, 2022헌마407, 2020헌바62, 2018헌바220, 2018헌바207, 2018헌바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9.22.	9.28.	사본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 리 사 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428, 2018헌바87, 2018헌마54, 2017헌바365, 2017헌마463, 2015헌바299, 2013헌마189, 2012헌바374, 2012헌바262, 2012헌바215, 2011헌바284, 2011헌바6, 2010헌바409, 2010헌바364, 2010헌마548, 2009헌마689, 2009헌바63, 93헌바43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관련 결정문 - 2022헌마1239, 2013헌바103, 2010헌바187, 2009헌바116, 2007헌가16, 2007헌가10, 2006헌바16								
140	94헌가7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9.22.	9.27.	사본
14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9.28.		
142	2002년 헌법재판소 서기보 합격자 중 법무사법 부칙 개정(2003.3.12. 제6860호)으로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인원 현황	전자 파일	인사과	공개	해당 인원 없음		9.28.	9.28.	전자 파일
143	2000.1.부터 2022.8.까지 헌법재판소에서 교정시설 관련(구 치소, 교도소) 재소자들이 헌법소원을 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사건의 결정 내용	사본	심판 민원과	부존재			10.12.		
144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관련 자료(청구인 법무부) 1. 재판관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질문한 그 문서 2. 공개변론에서 재판관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질문한 내용에 관하여 제출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답변서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부존재			10.12.		
145	검찰 수사권 축소 관련 공개변론의 청구인 의견서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10.12.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14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한 법률」 제9 조 제1항 제4 호	10.12.		
147	헌법재판소에 재직중인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 중 판사, 검사, 변호사, 비법조인 현황에 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공개 청구합니다. 헌법연구관 판사 (법조경력 5년미만()명, 5~10년()명, 11~15년()명, 16~20년()명, 21~25년()명, 26년이상()명 변호사, 검사 (법조경력 5년미만()명, 5~10년()명, 11~15년()명, 16~20년()명, 21~25년()명, 26년이상()명 비법조인 (법조경력 5년미만()명, 5~10년()명, 11~15년()명, 16~20년()명, 21~25년()명, 26년이상()명 헌법연구관보 판사 (법조경력 5년미만()명, 5~10년()명, 11~15년()명, 16~20년()명, 21~25년()명, 26년이상()명 변호사, 검사 (법조경력 5년미만()명, 5~10년()명, 11~15년()명, 16~20년()명, 21~25년()명, 26년이상()명 비법조인 (법조경력 5년미만()명, 5~10년()명, 11~15년()명, 16~20년()명, 21~25년()명, 26년이상()명	전자 파일	인사과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 제9 조 제1항 제5 호	10.20.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148	1. 현재 판례 ① 98헌마216 ② 99헌마289 ③ 2002헌마52 ④ 94헌마33 ⑤ 2013헌마142 ⑥ 2003헌마31 2. 공보 2005헌바20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11.1.	11.10.	사본
149	이대역 공직자 윤리규정 교육 여부(성교육, 폭력교육), 직원 이름 명부·근로시간 등, 평일 자전거 이용 등 코로나 방역 지침 위반 미인지 및 폭력· 추행 인지 위반 이유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부존재			11.1.		
150	1. 헌법재판소 2018.8.30. 선고 2014헌바180 결정문 2. 서울대가 저소득층 수험생 대상 특별전형을 대학수학 능력시험 성적으로만 선별 하도록 한 것에 대해 고등 학생이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청구 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 2022.10.7. 신문에 게재되 었던 사건의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11.1.		
15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1.		
152	정보공개처리대장 2017~2022 현재까지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자료		11.2.	11.10.	사본
15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2.		
154	2019헌바59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부존재			11.2.		
15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15.		
156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 원심판사건 목록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 출한 사건 목록		11.17.	11.17.	사본
157	2022.10.27. 선고 2019헌바117 판결문	사본	심판 민원과	취하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15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15.		
159	1. 2020년 6월30일 이전 접수 되었지만 2022년 10월 31일 현재 선고되지 않은 사건 목록 (접수일, 사건번호, 사건제목, 주심 재판관) 2. 2020년 6월30일 이전 접수 되었지만 2022년 10월 31일 현재 선고되지 않은 사건 수 (주심 재판관별 건수를 사건부호별로도 구분)	전자 파일	심판 사무과	부분 공개	해당 자료(사건별 주심재판관 부분 제외)	청구내용 중 사건별 주심재판관 부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11.23.	11.23.	전자 파일
16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25.		
16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25.		
162	1996.6.13. 선고 93헌마276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11.24.	12.1.	사본
16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25.		
164	1. 기록물분류기준표 2. 재판기록물 현황	전자 파일	심판 지원 총괄과	공개	1. 해당 자료 2. 재판기록물 보존현황		12.1.	12.1.	전자 파일
165	청구인이 나온 수영구 카페 CCTV 영상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11.23.		
166	대통령 비서실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첨부파일 포함) 및 이태원 참사 등 관련 다음 사항 1. 이태원 참사 관련 상급기관 등의 압력, 지시 등 2. 이태원 참사 후 귀 기관장의 업무 일정, 계획 등 3. 이태원 참사 후 귀 기관 구성원의 음주가무 현황 4. 귀 기관의 업무, 계획, 일정 등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부존재			11.23.		
16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25.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 리 사 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16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25.		
169	심리중 사건기록	사본	심판 민원과	기관 이송			12.1.		
170	심판민원과 공문서 내용 중 1.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에 출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관련 근거와 관련 문서 전체 2. “출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 최종결정한 공무원 이름	전자 파일	총무과	공개	해당 자료		12.13.	12.13.	전자 파일
171	1. 제1·2·3 지정부 헌법재판관 성명(한자), 연령 2. 지정부 공무원 성명, 직급 3. 위 헌법재판관 추천인 또는 추천기관 4. 위 헌법재판관 임기	사본	심판 사무과, 인사과	공개	해당 자료		12.13.	12.13.	사본
17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20.		
173	1. 헌법재판소 공관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직종, 직급, 공무원기준월액 2.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공관에 지출된 인건비지출금액	전자 파일	인사과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12.23.		
174	1. 2004헌마298 결정문 2. 행정심판법 제4조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에 관한 법률 전부 3. 행정소송법 제4조에 의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 관한 법률 전부 4. 2013헌마142 결정문 5. 수용자 의료처우 및 교정시설에 관한 위헌난 모든 판결문 6. 2014헌가16, 2013헌바343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1., 4~9. 해당 결정문 사본 2~3. 부존재		23.1.9.	23.1.7.	사본

일련 번호	청구사항		결정내용					처리사항	
	정보내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 내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175	7. 2017헌마1002, 2017헌마463, 2017헌마22 결정문 8. 수용자 운동 금지 처분 결정문 9. 교정시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관련 판결문 및 판례(2019헌마1403 등 67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관련 지난 5년간 정보(청구서, 의견서, 사실조회 등)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 제4호	12.23.		
176	1. 현재 2001. 7. 19. 2000헌마546 결정문 2. 현재 2000. 6. 1. 98헌마216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12.23.	23.1.3	사본
177	1. 신청인이 귀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자주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 2. 최근 신청인이 귀 기관에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귀 기관의 조치 사항 중 신청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사항 3. 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귀 기관의 조치할 사항 4. 청구인이 귀 기관에 청구한 정보공개신청서 및 귀 기관의 답변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공개	1. 부존재 2~4. 해당 자료		23.1.6.	23.1.6.	전자 파일
178	1. 97헌바22사건 결정문 2. 청구인이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상세 내역 3. 청구인이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1., 3. 해당 결정문 사본 2. 해당 자료		23.1.9.	23.1.13.	사본
179	1. 헌법재판소의 국선번호인 인원수 및 명단 2. 헌법재판소의 국선번호인 중 전문분야가 재개발인 국선번호인의 인원수 및 명단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1. 해당 자료 2. 부존재		23.1.10.	23.1.10.	사본
18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3.1.5.		



4. 비공개사유별 현황

비공개 건수	법령상 비밀·비공개 (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방 등 국익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관련 정보 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제5호)	개인 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제8호)
18				14	4			

◎ 헌법재판소공고 제2023-5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관 이종석의 주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2월 20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종석	
본인과의 관계	매각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에스엠	251	매각	21,259	2023. 1. 31.	삼성증권	
본인	엘엔에프	190	매각	39,805	2023. 1. 31.	삼성증권	
본인	나노신소재	425	매각	35,955	2023. 1. 31.	삼성증권	
배우자	LG전자	1,000	매각	91,600	2023. 1. 11.	삼성증권	
배우자	디오	1,500	매각	32,850	2023. 1. 31.	삼성증권	
배우자	에스엠	1,500	매각	127,050	2023. 1. 31.	삼성증권	
배우자	엘엔에프	500	매각	104,750	2023. 1. 31.	삼성증권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제도 안내

헌법소원 청구 시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국민을 위하여
국선대리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전자제출도 가능합니다.

국선대리인 선임기준

- 월평균 수입 300만원 미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대상자
- 기타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국선대리인 신청문의: 심판민원과 02-708-3460